

第 83・8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 97. 12. 5. ~ 12. 9./12. 22. ~ 12. 2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8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7. 12. 5 ~ 12. 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初創）會員委員總非青忠 回 88 後

本會總會

(0.51 ~ 2.51.50)

會員委員總非青忠

목

차

1997 • 12 • 통권 제57호

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21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29
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7
5.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6.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3
7. 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5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5일 (금요일) 10시 59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4.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제83회-제1차]

(10시 59분 개회)

● 의사과장 이흥무

지금부터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주 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11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7-12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공고 후인 12월 2일자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과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금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 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8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여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에는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8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12월 6일과 8일 양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평소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수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

출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부족재원중 적정 수준의 재원 확보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응시수수료 현행 4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검정수수료 재정 및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검정고시수수료는 '90년 12월 28일 4천원으로 개정하였으며, '97년 예산현황은 수수료수입 744만원, 세출예산 4,247만 2천원으로 1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타시·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1만원 이상인 시·도가, 6개 시·도이고 대부분 3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도 인상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를 1만원으로 개정할 경우 '98년도 검정고시 소요예산의 42.5% 정도를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입·고졸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실 신축 2,244㎡, 제천상고의 생활관 신축, 165㎡, 충주중학교외 1개교의 특별교실 증축 765㎡, 충주 예성초등학교외 2개교의 유치원사 신축 1,500㎡, 청원 미원초등학교의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교실 및 부속시설 개축 4,848㎡ 등 총 9,522㎡의 건물과 단양 교육청의 오지지역 교직원을 위한 사택 18동을 확보 예정이며, 단양 매포중학교의 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2,66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4.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5.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처분재산은 향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일이 없는 폐교재산인 제천시 백운초등학교 원월분교장 토지 1만 2,473㎡와 건물 766㎡, 공작물 5종과 입목죽 20본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국 소관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충주여고외 2개교의 다목적	▶ 참 조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별첨3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 계획안 설명자료 : 별책1 (끝에 실음) 이어서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기본 방향을 세입예산의 조정,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계상, '97년도 명시이월사업 확정, '97년도 불용액의 조정 등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7,462억 6,42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277억 9,906만원의 2.5%인 184억 6,52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54억 4,488만원, 증액교부금 55억 2,1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국고지원금 5억 5,806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41억 8,821만원을 감액한 112억 3,57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9,454만원, 보조금 313만원 등 9,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재산수입 48억 3,828만원, 잡수입 18억 2,921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568만원을 감액한 66억 3,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부담수입은 현대화시범학교 건립 포항제철 지원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는 60억 212만원 감액, 교육사업비 3,027만원 증액, 학교비 20억 6,622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5억 6,884만원 감액, 시설비 179억 478만원 증액, 제지출경비 374만원 증액, 예비비 50억 3,1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첨단 과학 기술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38억 7,313만원과 학생수용의 균형 유지를 위한 수용시설비로 충북예술고 이전경비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유치원사 3개원 신축비 11억 8,434만원을 계상,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농촌 학생들에게

[제83회-제1차]

교육·정보·문화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의 건립비 44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거리 통근을 지양하고 근무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지지역 교직원 사택 건립비로 6억 4,822만원, 교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기구입비 10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특별교실 25실 증축비로 15억 3,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화상회의 및 강의를 이용한 교육정보의 신속한 교류로 교육력 신장을 위하여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10억 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독립유치원사 신축비 11억 8,434만원등 연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66개 사업으로 총 173억 2,0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는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중 내부시설비 38억 7,3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당면한 교육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1997년도에 계획된 모든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2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3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처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에

하고 검정고시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오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8분)

● 의장 김광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안병일위원님, 조일환위원님, 정만재위원님, 이근수위원님, 이경윤위원님, 이상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김정길위원님, 이기수위원님, 신용철위원님, 박동기위원님, 박재현위원님, 이상다섯 분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 들으신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20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재현, 이경윤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재현, 이경윤 두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후 오후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이 12월 6일과 8일 이틀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제83회-제1차]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송병식,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 부 록

- ▶ 의사일정 : 별첨1
-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계획(안) : 별첨3
-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 별 책 부 록

- ▶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별책1
-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2
-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9일 (화요일) 11시 07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3.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경제살리기 결의문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교육감 제출)
3.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경제살리기 결의문 채택의 건(안병일위원 외 10인 위원)

(11시 07분 개의)

● 의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전체 위원님 연명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후에 현장방문을 마친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과 함께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전체 위원님 연명으로 발의하신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조례심사소위원회 조일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같은 날 회의를 갖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중요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4천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보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첫째, 개정시기 선택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이것이 심의가 됐었다라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4천원이 '90년 본 조례 당시에는 실비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간 '95년도 제증명 인상 문제 등 1차 개정 당시에 다소라도 현실화 됐더라면은 이번에 150%라는 이러한 숫자 상의 엄청난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지않았지 않느냐, 세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고학생 내지는 결손가정,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이러한 학생들이 상당수 해당이 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러한 쪽의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소요재원의 절대 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바는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수익자의 억지사지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의결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끝에 실음)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조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11시 15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일간,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277억 9,906만 8천원보다 184억 6,520만 7천원이 증액된 7,462억 6,42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증감액은 본청이 0.6% 증가된 38억 933만원, 지역교육청이 6.3% 증가된 96억 2,472만 1천원, 예비비가 108.1% 증가된 50억 3,11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12억 3,572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9,767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6억 3,180만 9천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존수입인 국가부담수입의 점유율은 총 예산액의 60.8%이며,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점유율은 예산액의 0.6%,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점유율은 35.9%, 주민 기관등 부담수입은 2.7%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 38억 933만원, 지역교육청 96억 2,472만 1천원, 예비비 50억 3,1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별 점유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며, 먼저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38억 7,313만 3천원, 충북예술고 이전경비 19억 2,200만원, 다목적교실 3동 신축비 11억 8,434만 6천원,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의 건립비 44억원, 오지 단양 지역 교직원사택 신축비 6억 4,822만 2천원, 교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기 378대 구입비 10억 6,710만원,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25실 신축비 15억 3,444만원, 교육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위한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10억 1,976만원, 공무원 인건비 조정 감액 65억 9,199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본청 21개 사업에 이월액 72억 9,448만 8천원, 지역교육청 45개 사업에 이월액 99억 9,240만 2천원으로 총 66개 사업에 172억 8,689만원이며, 계속비는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중 내부시설비 38억 7,313만 3천원입니다.

[제83회-제2차]

다음은 위와 같이 상정된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재원의 184억 6,520만 7천원으로 이중 60.8%에 해당되는 112억 3,572만 5천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동 재원의 교부목적과 보조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였는 바, 교육부의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원받은 자구노력지원비 55억 2,100만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한 것이며, 동 재원중 10억 1,976만원을 투자하여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신속한 교육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져 교육력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98억 1,457만 9천원을 투입하여 현대화 시범학교시설, 충북예술고 및 과학교육원이전, 독립유치원사 3개원 신축, 3개 중학교 급식시설, 고등학교 2교 생활관 신축, 특별교실 8교 25실 증축, 교실내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무실 냉방기 구입비로 10억 6,7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선학교

교무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냉방시설 설치학교는 금회 추경에서 냉방기 구입비 지원이 제외되었는 바, 향후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냉방기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적 실정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는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 국가부담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여 교부목적과 타당성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이 3일간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고 검토하였는 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본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까지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에도 모든 교육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끝에 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이기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질의를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원안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살리기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28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우리 교육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연명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안병일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안병일 위원

안병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11인 교육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등 국가의 미래가 희망적이던 때 지나친 과소비와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인하여 금융계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국가경제 부도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 위기를 넘겨야 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치솟는 물가와 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실업을 증가 등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혹독한 것인 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국민 모두의 참여 속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국민의식을 선도해 왔던 우리 교육인들이 이러한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국민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난국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자 다짐하며, 이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낭독하는 결의문은 우리 모두의 굳은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단지 결

의로써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결의가 교육가족 모두에게 전해져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온 국민이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참 조 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 별첨7

(끝에 실음)

(안병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안병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교육위원님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도내 각급 교육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타시·도 교육위원회 및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우리 전체 교육위원의 결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개정안 1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이들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동참, 술선수범하겠다는 결의를 하였습니 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세 교육감 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 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신 언론 관계관 여러 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 러,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 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6명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교육감 김영세,</td> <td style="width: 33%;">부교육감 구관서,</td> <td style="width: 33%;">초등교육국장 민병구,</td> </tr> <tr> <td>중등교육국장 송대현,</td> <td>관리국장 신재철,</td> <td>공보담당관 김흥목,</td> </tr> <tr> <td>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td> <td>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td> <td>초등장학과장 김천호,</td> </tr> <tr> <td>중등장학과장 이재관,</td> <td>중등교직과장 김영기,</td> <td>과학기술과장 백경흠,</td> </tr> <tr> <td>총무과장 고일영,</td> <td>행정과장 이상찬,</td> <td>재무과장 이기수.</td> </tr> </table> ※ 부 록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 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 별첨7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별첨 1)

議 事 日 程

第83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7.12. 5.~12. 9.(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12. 5.(금) 10:00 11:00	☐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12. 5.~12. 9.(5일간) 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4.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12. 6.(토) ~ 12. 8.(월)	☐ 소위원회 활동 및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 12. 7. 공휴일
12. 9.(화)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3. '9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4. 경제살리기 결의문 채택의 건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3-1 호
의결 년 월 일	1997. 12. . (제 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11. 26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1
----------	--------

제출년월일 : 1997. 11. 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4,000원을 10,000원으로 함.

□ 개정근거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

□ 조 례 안 : 불임

□ 참고사항 : 불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타시·도 검정고시 수수료 비교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000원" 을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한수수료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한수수료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제2조(수수료 징수) ①교육감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4,000원 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①교육감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4,000원 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①-	- - - - -	- - - - -
②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서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포함)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 한다.	②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서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포함)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 한다.	②-	- - -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교육부령 제686호, '96. 8.30.)

제12조(수수료)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교육부령 제664호, '95. 8. 1.)

제17조(고시료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타시·도 검정고시 수수료 비교표

1. 현행 검정고시 수수료 : '90.12.28. 4,000원으로 개정

2. '97년도 검정고시 예산현황

가. 본도현황

(단위:천원)

1인당 응시수수료	수 수 료 수 (A)	세 출 예 산 액 (B)	부 족 액	비 율 (A/B)	비 고
응 시 인 원					
4	7,440	42,472	35,032	17.5 %	
1,861					

나. 타시·도 현황

(단위:천원)

구분 / 시·도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1인당 응시수수료	10	5	10	10	14	12	10
응 시 인 원	16,424	6,245	5,922	3,407	3,666	3,842	2,600
응시수수료총액	164,240	31,225	59,220	34,070	51,324	46,104	26,000
검정고시예산총액	252,340	87,962	93,743	65,819	57,180	42,535	84,835
비 율 (%)	65.0%	35.4%	63.1%	51.7%	89.7%	108.3%	30.6%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울 산	비 고
5	4	5	6	0	6	2	6	
2,165	1,181	3,697	1,677	816	4,963	349	.	
10,825	4,724	18,485	10,062	0	29,778	698	.	
37,638	37,961	53,000	41,024	53,254	88,226	27,200	.	
28.7%	12.4%	34.8%	24.5%	0	33.7%	2.5%	.	

※ 수수료 10,000원 이상은 6개 시·도이며, 기타 시·도도 인상 추진 계획임.

3. 수수료 10,000원으로 개정할 경우 '98년도 검정고시 예산추정

(단위 : 천원)

1인당수수료	지원예상 인 원	예 수 입 액 (A)	세 출 예 산 액 (B)	부 족 액	비 율 (A/B)	비 고
10	1,800	18,000	42,320	24,320	42.5	

(별첨 3)

의안번호	제 82 호
의 결	1997. . .
년 월 일	(제 회)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12.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03-2
----------	------

제출년월일 : 1997. 1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추가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 충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792m ²
○ 증평공업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792m ²
○ 제천상업고등학교	특별교실, 생활관 신.증축	480m ²
○ 충주 예성초등학교	유치원사 신축	540m ²
○ 충주중학교	특별교실, 계단실 증축	450m ²
○ 제천 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유치원사 신축	1,150m ²
○ 청원 미원초등학교	교실 및 부속시설 개축	4,848m ²
○ 영동 부용초등학교	유치원사 신축	470m ²
○ 단양교육청	교직원 사택 확보	18동
○ 단양 매폐중학교	운동장 부지 확보	2,664m ²

□ 공유재산의 처분

○ 폐교재산 매각

· 제천 (구)백운초등학교 원월분교

-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44-1외 2필지

12,473m²

- 위 지상 건물 4동

766.6m²

- 위 지상 공작물 5종

- 위 지상 입목죽 20본

3. 제안근거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 명 자 료 : 별 책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2,664	350,000	1	2,664	350,000
		건물				11	9,522	8,683,977	11	9,522	8,683,977
		기타									
	1. 매 입	토지				1	2,664	350,000	1	2,664	350,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1	9,522	8,683,977	11	9,522	8,683,977
		기타									
처분	계	토지				1	12,473	37,918	1	12,473	37,918
		건물				1	766.6	225,404	1	766.6	225,404
		기타				1		471	1		471
	4. 매 각	토지				1	12,473	37,918	1	12,473	37,918
		건물				1	766.6	225,404	1	766.6	225,404
		기타				1		471	1		471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 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충주여고	건 물	충주시 용산동 2060	792	794,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쪽
2	증평공고	건 물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20	792	794,000	'	'	'	2쪽
3	제천상고	건 물	제천시 신백동 182-3	315	216,501	'	'	'	3쪽
		건 물	'	165	176,000	'	'	'	
4	예 성 초	건 물	충주시 교현동 383-1	540	394,782	'	유아교육환경개선	'	4쪽
5	충 주 중	건 물	충주시 호암동 172	450	308,908	'	교육환경개선	'	5쪽
6	홍 광 초	건 물	제천시 모산동 396-1	660	662,000	'	'	'	6쪽
		건 물	'	490	394,782	'	유아교육환경개선	'	
7	미 원 초	건 물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	4,848	3,900,000	'	농어촌현대화시범 학교	'	7쪽
8	부 용 초	건 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17-1	470	394,782	'	유아교육환경개선	'	8쪽
9	단양교육 청	건 물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8동	648,222	'	오지지역교직원 사택확보	'	
10	매 포 중	토 지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121-3외 3필지	2,664	350,000	'	운동장부지 확보	'	9쪽
계		토 지	1 교	2,664	350,000				
		건 물	9 교	9,522	8,683,977				
		계			9,033,977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천원)

연 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백운초 원월분교	토 지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44-1외 2필지	12,473	37,918	하반기	폐교재산	.	10쪽 -13쪽
		건 물	.	766.6	225,404	.	.	.	
		공작물	.	5종	448	.	.	.	
		입목죽	.	20본	23	.	.	.	
예		토 지		12,473	37,918				
		건 물		766.6	225,404				
		공작물		5종	448				
		입목죽		20본	23				
		계			263,793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3-3 호
의 결	1997. 12. .
년 월 일	(제 회)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12. 2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번	안 호
	83 →

제출년월일 : 1997. 1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12억 3,572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9,767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6억 3,180만 9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5억원, 계 184억 6,520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본청 38억 933만원, 지역교육청 96억 2,472만 1천원, 예비비 50억 3,115만 6천원, 계 184억 6,520만 7천원이 증가하여
- 세입·세출 각 184억 6,520만 7천원이 증가된 7,462억 6,427만 5천원으로 편성 함.

□ 예 산 안 : 별 책

□ 참고자료 : 별 책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첨 5)

(제83회 임시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41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4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41
4. 토론 주요내용	41
5. 심사보고 주요내용	41
6. 심사결과	41
7. 소수의견 주요내용	42
8. 기타 필요한 사항	42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7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1997년 12월 5일(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7년 12월 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4,000원을 10,000원으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것으로,

개정시기 선택에 있어서 사유발생시점, 당초예산편성 이전에 개정을 추진하여야 부
족재원 충당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검정고시 수수료의 인상금
액에 대해서도 다소 과다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논의되었으나, 소요재원의 절대
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
음.

6. 심사결과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6)

(제83회 임시회)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45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45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45
4. 토론 주요내용	45
5. 심사보고 주요내용	46
6. 수정안의 주요내용	50
7. 심사결과	50
8. 소수의견 주요내용	50
9. 기타 필요한 사항	50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7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1997년 12월 5일(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7년 12월 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7년 12월 6일)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7년 12월 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부담수입 11,235,725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97,67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631,809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500,000천원의 세입재원으로,

- 본청 3,809,330천원, 지역교육청 9,624,721천원, 예비비 5,031,156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 총 18,465,207천원이 증가된 746,264,275천원의 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97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27,799,068천원보다 18,465,207천원이 증액된 746,264,2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
합 계	746,264,275	100.0	727,799,068	100.0	18,465,207	2.5
교육위원회	735,367	0.1	735,367	0.1	0	0.0
본 청	574,394,157	77.0	570,584,827	78.4	3,809,330	0.6
지역교육청	161,449,598	21.6	151,824,877	20.9	9,624,721	6.3
예 비 비	9,685,153	1.3	4,653,997	0.6	5,031,156	108.1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1,235,725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97,67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631,809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5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합계	18,465,207	100	
보통교부금	△4,188,217	△22.6	○ 보통교부금조정액 △4,188,217
특별교부금	5,444,879	29.5	○ 영어연구회 지원 5,000 ○ 예술고 이전경비 1,922,000 ○ 위성수신장치 보급 507,000 ○ 귀국학생 교육대책 400 ○ 학교운영비지원 5,100 ○ 교육개혁우수학교 견학 3,900 ○ 타시도 우수학교 방문 5,100 ○ 문서유통시스템구축 19,000 ○ 재해복구비 79,157 ○ 오지(단양)지역교직원사택신축 648,222 ○ 충주여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 중평공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 홍광초 다목적교실 신축 662,000
중액교부금	5,521,000	29.9	○ 자구노력지원비 5,521,000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00,000	21.1	○ 현대화시범학교 3,900,000
국고보조금	558,063	3.0	○ 실험시범유치원운영(2교→1교) △3,000 ○ 공고 「2+1」 체제지원 16,000 ○ 실고첨단교육공학매체지원 318,000 ○ 초등영어담당교사연수 118,186 ○ 교육용 컴퓨터보급 △269,465 ○ 교원용 컴퓨터보급 △169,450 ○ 국립학교 컴퓨터보급 53,900 ○ '97.직업교육 확충비 434,258 ○ 대학수학능력시험 63,892 ○ 운동경기부지원 52,725 ○ 학교체육연구시범학교(과제변경) △500 ○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5,000 ○ 학교전산망구축 △59,243 ○ 컴퓨터교육연수 △2,240
비법정전입금	94,546	0.5	○ 도서관운영비(9개시군) 94,546
지원금	3,127	0.0	○ 재해복구비(도청) 3,127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00	2.7	○ 현대화시범학교(포철지원금) 500,000
자체수입	6,631,809	35.9	○ 재산임대수입 77,906 ○ 재산매각수입 4,760,374 ○ 사용료및수수료 △35,686 ○ 실습수입 △127,341 ○ 예금이자수입 1,514,140 ○ 잡수입 442,416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본청 3,809,330천원, 지역교육청 9,624,721천원, 예비비 5,031,15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 별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합 계	3,809,330	9,624,721	5,031,156	18,465,207	100.0
교육행정비	△5,794,111	△208,010		△6,002,121	△32.5
교육사업비	30,269	0		30,269	0.2
학 교 비	1,178,205	888,016		2,066,221	11.2
사학지원비	20,860	△589,700		△568,840	△3.1
시 설 비	8,370,366	9,534,415		17,904,781	97.0
제지출경비	3,741	0		3,741	0.0
예 비 비			5,031,156	5,031,156	27.2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 3,873,133천원
- 충북예술고 이전경비 1,922,000천원
- 다목적교실 3동 신축비 2,250,000천원
- 독립유치원사 3개원 신축비 1,184,346천원
-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의 건립비 4,400,000천원
- 오지 단양지역 교직원사택 신축비 648,222천원
- 교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 378대 구입비 1,067,100천원
-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25실 신축비 1,534,440천원
- 교육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위한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019,760천원
- 공무원 인건비 조정액 △6,591,996천원 등임.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내역

○ 명시이월 사업은

- 본청 21개 사업에 이월액 7,294,488천원
- 지역교육청 45개 사업에 이월액 9,992,402천원으로
- 총 66개 사업에 17,286,890천원임.

○ 계속비는

-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중 내부시설비 3,873,133천원임.

나. 삭감내역 : 해당 없음.

다. 종합의견

금회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18,465,207천원으로 이중 60.8%에 해당되는 11,235,725천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동 재원의 교부목적과 보조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정히 계상하였으며,

특히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원받은 자구노력지원비 5,521,000천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한 것이며, 동 재원 중 1,019,760천원을 투자하여 원격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신속한 교육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져 교육력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9,814,579천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시범학교시설, 중복예술포럼 및 과학교육원이전, 독립유치원사 3개원 신축, 3개 중학교 급식시설, 고등학교 2교 생활관 신축, 특별교실 8교 25실 증축, 교실내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교육여건에 크게 개선될 것임.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무실 냉방기 구입비로 1,067,1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일선학교 교무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냉방시설 설치학교는 금회 추경에서 냉방기구입비 지원이 제외되었는 바, 향후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냉방기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적 실정을 감안하

여 에너지 절약이라는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정안의 주요내용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금회 추경예산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가 부담수입을 주재원으로하여 교부목적과 타당성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경제 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 의 문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매진하여 나가던 우리나라가 최근 취약한 경제 구조와 지나친 과소비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하고, 기업들의 부도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울때 항상 국민의식을 선도해 왔던 우리 교육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므로써 다시금 경제도약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경제 위기가 내일의 번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 전원은 솔선수범하여 경제살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어려운 나라경제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출장을 억제하고 자녀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도 자제한다.
- . 물자 및 에너지절약을 솔선 실천한다.
- . 과소비를 추방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한다.
- . 학생들에게 외제상품 사용을 자제하고,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한다.
- . 교사·학부모·학생등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경제살리기 실천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1997년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

第 8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 97. 12. 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初編）會員委育燦蜚牯忠 回 88 第

殺齋會 會員委小查審因剝

(2 51 59')

會員委育燦蜚牯忠

목

차

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	---------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5일 (금요일) 14시 01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제83회-조례심사소위원회]

● 안병일 위원

조일환위원을 추천합니다.

● 이경운 위원

그러세요.

● 조일환 위원

이위원장님 하세요

● 위원장 정만재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옴)

(박 수)

제가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본 적이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조례가 진행이 간단하고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강력하게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여기에 동감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성의껏 사회를 보겠습니다.

교육위원님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후보를 추천을 해 주시죠.

● 이경운 위원

현재 부의장으로 안병일위원이 한번도 안해보신 것 같습니다.

● 안병일 위원

이경운위원이 하도록 하죠.

● 위원장 조일환

저는 이경운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정만재위원님 어떻습니까?

● 정만재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우리 이경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운위원께서 본 조례심사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간사 이경운

여러 동료위원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아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간사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8분)

● 위원장 조일환

다음은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해서 본 소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전 간담회 때 일정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좋은 의견으로 오늘의 것은 양도 많지 않고 내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하죠?

● 안병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간사 이경윤

좋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오늘 내로 진지한 심사, 사전에 의안이 위원님들한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받아 들

여서 금일로 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늦더라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10분)

● 위원장 조일환

이어서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집행청 관계관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다음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만재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만재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경윤위원님.

● 간사 이경윤

아까 본회의 때 설명하신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4천원씩 징수하던 것을 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소요경비의 45% 정도를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무엇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하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중등교직과장 김영기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검정고시 추진을 하는데 있어 경비가 17.5%밖에 수수료가 충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돼가지고 예산을 좀 덜 확보하려는 뜻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인상을 갖다가 현재 17%의 자립도, 말하자면 지금 받고 있는 소위 검정료로는 17%를 충당할 수 있고, 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42.5%의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결손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상을 발의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또 한가지 이유는 당초에 이와 같이 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대개 취학하지 못한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네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검정고시응시 추세를 보면, 응시자 현황을 보면 여러가지겠지만은 고입이나 고졸간의 중간퇴학자, 중퇴자가 응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퇴자들 중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이수하지 못해 중퇴한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개는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내신등급을 잘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만원이라고 하는 경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인상에 대한 소위의안에 대한 상정 설명을 보충하시는 의미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위원님?

● 안병일 위원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 앉아서 질의를 많이 하면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검정고시 응시자 현황을 주십시오,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말씀에도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95년도에 국졸하고 검정, 이 중퇴자 보다는 국졸, 검정이 더 영세하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고학생이 아니냐, 고학생. 그러니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입에서 50%가 넘습니다.

또 고졸, 그러니까 대학입시에 자료를 넣는 거죠. 그것도 450명이니까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원비율로 봐서 이것이 과연 지금 만원에 대해서 올리겠느냐, 만원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안에는 이 결손금액은 현재 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결손나는 42.5%를 충당하고 47.5%의 결손, 이것을 보충하겠다고 '98년도 예산에 올리셨는지, 아니면 17.5%를 여기서 충당하고 나머지 82.5%를 '98년도에 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보조, 보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이 '90년 12월 28일날 조례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95년도 개정할 당시에 결손금액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17.5%라는 것이 그 당시 17.5%냐, 지금 현재 물가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의 지금 현재의 17.5%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17.5%가 자부담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95년도, 2년 전에 개정을 했다면 42.5%이하로 자급이 어렸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인상해서 높일 일이지 2년만에 또 4천원에서 만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돼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150% 인상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 조례를 한번 고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불과 2년 전에 4천원이 2년후에 150%라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번째, 지금 경상북도같은 데는 재료를 안받습니다.

2천원 받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만 4천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참 고자료대로 고학생이나 결손가정,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우리가 생활보조를 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장학금이나 이것 말고 다른 보호대

[제83회-조례심사소위원회]

책을 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 무부에서는 가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월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것 말고 여타에 보조하거나 우리가 예산상으로 도와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번째입니다.

6개 시·도의 앞으로 인상율이 모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6개 시·도는 지금 계획이 얼마씩 올릴 계획이나,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조사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은 얼마로 돼 있는데 상정을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냥 타시·도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몇 월 며칠 날까지는 밝히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시·도는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조사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정 어려우시면 해당 계장님이라도 보다 소상하고 상세하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락을 드립니다.

(중등교직과장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하고 말함)

오.”하고 말함)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네가지에 대해서 집행청의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시겠어요?

(학사계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함)

답변하셔도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학사계장 황용수

학사계장 황용수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검정수수료 98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현재 종전의 4천원으로 되어 있는 4천원으로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개정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방금 본 조례가 개정되면 ‘98년도 제2회

추경 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95년도 개정 당시 인상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전의 개정 내용은 지금 상정돼 있는 검정고시수수료 개정내용이 아니고 재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증명수수료는 합격증 발급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재증명 수수료로 하고 합격증 발부 수수료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건당 200원을 3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정하는 검정수수료와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세번째, 불우학생에 대한 결손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재학생의 5% 이내에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우퇴학자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에서는 보조하는 것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아마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응시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졸, 중졸자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국졸, 중졸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진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졸 응시자들을 보면 진학 후에 바로 이 분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회적으로 경제 자력을 한 후에 5년 정도나 10년 후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 1만원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6개 시·도의 수수료 인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계획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각시·도에 재조사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제가 질문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미안하지만 과장님 여기 보면 6개 시·도가 모두 인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2개 시·도를 유선으로 물어 봤습니다.

적다고 생각하느냐, “계획 없음”,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시·도의 인상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학사계장 황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답변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 학사계장 황용수

지금 6개 시·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그 제안설명할 때에 참고자료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수수료 1만원 인상은 6개 기타 시·도도 추진 인상 계획임, 그랬어요. 무슨 근거에서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위원들이 심의할 때 “야 우리 시·도는 낮고, 다른 시·도는 이미 만원 인상이고, 나머지 낮은 도에는 추진계획이 확인 됐다.” 그렇게 이야기 하죠. 그런데 계장님도 “6개 시·도의 추진계획은 아는 바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쭙보느냐 하면은 죄송하지만 본청에서 주시는 자료는 다 믿어야 되는데 위원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요. 제가 적다고 돼 있는 2개 시·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계획이 있다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특히 경북,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어촌은 학생의 수업료는 중학교까지 면제해 주죠?

● 학사계장 황용수

예

● 위원장 조일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금 수업료 결손가정 5%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1만원을 가지고 충당을 42.5%,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95년도에는 재증명 요구에 대한 인상만 하고 그 때도 상당한 결손이 났었죠, ‘95년도에도 4천원을 ‘95년도 시행한 것이죠, 그렇죠?

● 학사계장 황용수

예

● 위원장 조일환

5년 뒤에도 상당한 결손이 됐는데 안만졌다가 결과는 2년 뒤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실 때에 우리 계장님이 위원이고, 또 실제 이것에 대한 수혜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첫번째 이 예산안을 내년도에 해서 또 추가해서 추경을 하겠다, 얼마나 사후의 소모입니까?

왜 이렇게 시기를 따지느냐,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조례를 해 놓으면은 예산할 때 통과하면 되잖아요. 왜 추경에 가서 손을 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원이 액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의안이 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시기가 있다. ‘98년 예산을 불과 한달도 안되는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켜냈는데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도 상반기에 손을 대야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문제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이런 반영

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번째, 이것이 '90년도에 개정을 하고 '95년도에 가서 또 한번 개정을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명수수료,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것을 그야말로 이제 와서 한꺼번에 그때 일부 올렸으면은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150%가 아니라 50% 올리고 이런, '90년에 한 것을 7년만에 고치니까 마치 위원들은 수요자 생각도 안하고 그냥 올렸다.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현실화 할 때에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고학생, 이것에 대해서 재증명을 하실 때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또 학교에서 5% 미만에 드는 학생,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소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정말로 이런 의안은 올리시면 안됩니다.

위원을 어떻게 압니까?

위원이 이것 받으면 전부 다 믿고 “어 좋아” 그렇게 의결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유선으로 알아 봤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 전혀 계획 없음 ” 그런데 여기는 6개 시·도도, 기타 시·도도 인상 추진 계획임. 이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저는 제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도에 연락을 해서 어떠한 추세에 있으며,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알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것은 보고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은 이것을 그대로 해야지, 거짓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 뜻입니다.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논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왜 안올렸어요. 한꺼번에 150% 올린다는.....

●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여러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사무가 좀 번거롭더라도 제 때에 적절하게 현실화 해야 됩니다.

● 간사 이경운

시기적으로 나라의 어려움도 많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나 지금까지의 고충으로 봤을 때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제83회-조례심사소위원회]

그래서 본 위원도 만원으로 현실화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찬성합니다 .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액수는 개정안 조례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뼈아픈 말 같습니다만 우리들 위원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 활동에 좋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과 아울러, 본 소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경윤, 위원 정만재, 이근수, 안병일.

0 출석공무원 : 2명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학사계장 황용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2
- ▶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3

(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考
1997. 12. 5. (金) 14:00~	1. 開會 2. 委員長 및 幹事 選任 3. 議事日程 決定의 件 4. 忠清北道高等學校入學資格 및 高等學校卒業 學力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查 5. 散會	第1次 小委員會

第 8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97. 12. 5 ~ 12. 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初盟）會員委育燐蜚非肅忠 回 28 後

凝齋會 會員委小翼先・翼齋

（8. 51 ~ 2. 51. 79'）

會員委育燐蜚非肅忠

목

차

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
I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1
III. 제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3
IV.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5일 (금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행 박재현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박재현

이기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여러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에서 이와 같이 임석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4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출 방법은 종전의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길 위원

신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신용철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신용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5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과 6일, 8일의 3일간으로하여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날짜별로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

기 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06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1997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우선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금번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고서 다음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좌석순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 위원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내용중에서 특별교부금 54억 4,488만원, 증액교부금 한 55억, 교육환경개선비가 약 39억, 국고보조금이 약 5억, 지방자치단체전입금 9,767만원, 기관동 부담금 약 5억 이래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가 지정된 수입이 전체 160억 2,161만원으로 약 우리 예산의 추경에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예산서를 검토

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에서는 법정기준 미달교의 특별교실 확보라든지, 독립유치원사를 중설하는가 하면 예산절감액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내 전 교무실에 내년에는 냉방기를 보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일선 교육환경에 치중을 두고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질문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없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로 당초예산보다 60억 212만 1천원이 절감이 되어있고, 사학지원비를 5억 6,840만원이나 또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시·군 도서관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당초예산보다 9,454만 6천원이나 추가로 확보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행정전산화 사업에서 DSU라는게 있지요. 컴퓨터에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기계인가 그럴겁니다. 손바닥만한 그런 기계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임대하는 것으로 바뀐놓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당초예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놔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수

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66기관에 전체 초고속 국가 전용을 해가지고 전산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신회선을 쓰기 때문에 DSU라는 통신장비를 사드려야 됩니다.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의 통신사정이나 예산사정상 지금 124K이상으로 통신설비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하게되면 학교에서 사용료가 월 40만원내지 50만원씩 사용료를 내야됩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을 그것 말고 9.6K로 해도 지금현재 문서유통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9.6K로 DSU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놓으면 앞으로 몇년 안가면 교체를 해야됩니다. 교체를 하게되면 우리가 40만원씩, 50만원씩 주고 산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걸 임대해서 한국통신에서 빌려서쓰고 월 사용료 2만원씩만 내면 1년내지 2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이 변하면 그때가서 구입하

기로 해가지고 DSU를 사는 것 보다는 임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걸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당초예산안은 구입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또 이걸 지금에 와서 임대를 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준비성이 조금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립학교는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사립학교에는 그 설치비를 저희들이 그만큼 보조를 했는데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지 않고 잔액으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 위원장 이기수

그다음은 박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동기 위원

박동기 교육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목적교부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또 본청에서 사업을 세우실 때에 완급을 따져서 사업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의말씀 드릴 것은 세출예산 주요투자내역을 보면 교원복지증진을 위해서 교무실 냉방기보조를 한 10여억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78대입니다. 그러면 378대를 378개교에다가 하는 것이지.

●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기존에 비치되어있는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비치가 안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전학교입니다.

● 박동기 위원

전학교, 그러면 나머지학교는 이미 비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이군요.

● 행정과장 이상찬

이미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박동기 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것에 대한 이것에 부응하는 어떤 예산 특별배치를 해주는

● 행정과장 이상찬

이미 먼저 사왔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줄 재원은 없고해서 할 수 없습니다.

● 박동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무실의 냉방장치 해주는 것은 모든 교원들이 쌍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시국에 미루어 봐서 완급을 따질 때에 이것이 우선 되어야겠다하는 것은 머리속에 지금 그리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박동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박재현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재현 위원

교육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박동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좋긴 좋은데 시국이 마침 그렇게 되어서 또 언론계통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절박이 이것을 사들여가면 전기의 수요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무엇하더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기가 마치 그런 일에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3일에 시·도 관리국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차관님이 임석을 해가지고 말씀이 계셨고,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그날 임석을 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원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냉장고까지도 교무실에 비치할 해놓고 에어컨은 물론이고, 양탄자까지도 깔아 줘야할 그런 세월이 왔는데 에어컨 정도는 필수로 지금 해줘야할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침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GNP의 5%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자기들에게 느끼는 것은 없다고 그런답니다. 다해주고 시설잘해주고 그런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해준건 뭐냐,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 박동기 위원

교원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교원한테 해준게 별로 없거든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운 것도 얘기를 했는데

● 박동기 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그런 감은 있다 그

런 애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도 그런 애기는 오고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간사 이기수 보충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 박재현 위원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신용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용철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차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박재현, 박동기. ○ 출석공무원 : 14명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송병식,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행정과 예산계장 신건환, 시설과 시설기획계장 서광범.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1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별첨2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6일 (토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附議된 案件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을 끝냈으
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시
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최종 합의된 것은 동 추경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8일 오후에
3차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제83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박재현, 박동기.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12월 8일 (월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8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附議된 案件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00분 개회)

1.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논의·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제3차 예·결산소위원회]

▶참 조 1.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 참조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박재현, 박동기. 0 출석공무원 : 3명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 예산계장 신건환 0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 참조	

(별첨 1)

豫算・決算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997. 12. 5. (金) 14 : 00 ~	1. 開會 2. 委員長 및 幹事 選任 3. 議事日程 決定의 件 4. 1997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本廳, 地域教育廳) 5. 散會	第1次 小委員會
1997. 12. 6. (土) 10 : 00 ~	1. 開會 2. 1997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計數調整) 3. 散會	第2次 小委員會
1997. 12. 8. (月) 14 : 00 ~	1. 開會 2. 1997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議決) 3. 散會	第3次 小委員會

(별첨 2)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I. 기본방향

- 세입예산 조정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계상
- '97. 명시이월사업 확정
- '97. 불용(예정)액 조정

II. 재원별 개요

(단위:천원)

재원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보통 교부금	경상재정교부금조정	△4,188,217	
특별 교부금	충북예술고이전경비외12건	5,444,879	
증액 교부금	시·도교육청 자구노력지원비	5,521,000	
교육환경개선 교 부 금	현대화시범학교	3,900,000	
보 조 금	직업교육확충비외13건	558,063	
일 반 회 계 전 입 금	도서관운영비(10개시군)외1건	97,673	
자 체 재 원	재산매각대외5건	6,631,809	
기 타	현대화시범학교포철지원금	500,000	
합 계		18,465,207	

Ⅲ. 예산액 규모

1. 예산총액

(단위: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746,264,275	727,799,068	18,465,207	기정예산대비 2.5% 증가

2. 세입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국가부담수입	667,864,015	89.5	656,628,290	90.2	11,235,725	1.7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	5,367,743	0.7	5,270,070	0.7	97,673	1.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계부담수입	72,532,516	9.7	65,900,707	9.1	6,631,809	10.1
주민(기관등)부 담수입	500,001	0.1	1	0.0	500,000	-
합 계	746,264,275	100.0	727,799,068	100.0	18,465,207	2.5

3. 세출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교육위원회비	735,367	0.1	735,367	0.1	0	0
교육행정비	476,736,296	63.9	482,738,417	66.3	△6,002,121	△1.2
교육사업비	5,558,270	0.8	5,528,001	0.8	30,269	0.6
학 교 비	71,856,728	9.6	69,790,507	9.6	2,066,221	3.0
사학지원비	48,724,415	6.5	49,293,255	6.8	△568,840	△1.1
시 설 비	132,915,720	17.8	115,010,939	15.8	17,904,781	15.6
제지출경비	52,326		48,585		3,741	7.7
예 비 비	9,685,153	1.3	4,653,997	0.6	5,031,156	108.1
합 계	746,264,275	100.0	727,799,068	100.0	18,465,207	2.5

IV. 세입 · 세출 예산개요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세	액	예비비 ① - ②
구 분	내 역	금 액 ①	내 역	금				
				본 청	시 군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조정	-4,188,217	세출예산조정(집행잔액)	-1,244,514	-668,354	-1,912,868	-2,275,349	
특별교부금	영어연구회 지원	5,000	영어연구회 지원	5,000		5,000	0	
	예술고 이전경비	1,922,000	예술고 이전경비	1,922,000		1,922,000	0	
	위성수신장치 보급	507,000	위성수신장치 보급	78,000	429,000	507,000	0	
	귀국학생 교육대책	400	귀국학생 교육대책	400		400	0	
	학교운영비지원	5,100	학교운영비지원(주성초)		5,100	5,100	0	
	교육개혁우수학교 건학	3,900	교육개혁우수학교 건학(초장)	3,900		3,900	0	
	타시도 우수학교 방문	5,100	타시도 우수학교 방문(공보)	5,100		5,100	0	
	문서유통시스템구축	19,000	문서유통시스템구축	19,000		19,000	0	
	재해복구비	79,157	재해복구비	39,274	39,883	79,157	0	
	오지(단양)지역교직원사택신축	648,222	오지(단양)지역교직원사택신축		648,222	648,222	0	
	충주여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충주여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794,000	0	
	증평공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증평공고 다목적교실 신축	794,000		794,000	0	
	홍광초 다목적교실 신축	662,000	홍광초 다목적교실 신축		662,000	662,000	0	
중액교부금	소 계	5,444,879		3,660,674	1,784,205	5,444,879	0	
	지구노력지원비	5,521,000	원격화상회의 시스템구축	1,019,760		1,019,760	4,501,240	
	현대화시범학교	3,900,000	현대화시범학교		3,900,000	3,900,000	0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내 역	세 출		예비비 ① - ②	
	내 역	금 액 ①		본 청	금 액		
					시 군		계 ②
국고보조금	실험시범유치원운영(2교→1교)	-3,000	《당초 1교 반영》		0	-3,000	
	공고 「2+1」 체제지원	16,000		16,000	16,000	0	
	실고첨단교육공학매체지원	318,000		318,000	318,000	0	
	초등영어담당교사연수	118,186		118,186	118,186	0	
	교육용 컴퓨터보급	-269,465	《세출:예비비로 충당》		0	-269,465	
	교원용 컴퓨터보급	-169,450	《세출:예비비로 충당》		0	-169,450	
	국립학교 컴퓨터보급	53,900		53,900	53,900	0	
	·97. 직업교육 확충비	434,258		434,258	434,258	0	
	대학수학능력시험	63,892		63,892	63,892	0	
	운동경기부지원	52,725		52,830	52,830	-105	
	학교체육연구시범학교(과제변경)	-500	《세출:예비비로 충당》		0	-500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5,000	《당초예산편성》		0	5,000	
	학교전신망구축	-59,243	《세출:예비비로 충당》		0	-59,243	
	컴퓨터교육연수	-2,240	《세출:예비비로 충당》		0	-2,240	
	소 계	558,063		1,057,066	-499,003		
비법정전입금	도서관운영비(9개시군)	94,546	도서관운영비(9개시군)	94,546	0		
지원금	재해복구비(도청)	3,127	호우피해학생 수업료지원		3,127	0	
기관등부담금	현대화시범학교(포철지원금)	500,000	현대화시범학교(진전)	500,000	500,000	0	
자체수입	재산임대수입	77,906	인건비 조정		-6,591,996		
	재산매각수입	4,760,374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816,600	-1,479,600		

V. 세출예산 주요투자 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현대화시범학교	4,400	진천이월초,청원미원초
충북예술고이전경비	1,922	교육여건개선
오지지역교직원사택신축	648	단양지역
다목적교실신축	2,250	3동(충주여고,증평공고,제천홍광초)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	1,020	본청↔지역교육청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보급	507	1,000천원×507교
실고직업교육확충비	768	
과학교육원내부시설	3,873	
독립유치원사신축	1,184	3개원
교무실냉방기보급	1,067	378대
급식학교시설	679	3개중학교(청주,충주,제천)
퇴직수당부담금	777	
생활관신축	335	2교(제천상고,충원고)
특별교실증축	1,534	8교25실 (봉정초3,용담초2,충주중5, 충주북여중3,한천초2,옥천상고3.5, 제천상고3.5,충주상고3)
교실환경개선(꼭면칠판)	526	
공무원인건비조정	-6,592	
계	14,898	